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90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종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2. 1. 선고 2019가단10381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8. 5. 18.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131,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8. 5. 18.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지급하라(위 청구취지에 의하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동일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물반환 청구와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원상회복 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이므로 판단 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공격방어방법으로 보고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사해행위의 성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하며”를 “피고는 국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여야 했고,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상회복의 가부 및 배상가액의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나아가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인

59,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2018. 5. 18. 기준으로 산정한 27,131,000원(= 27,950,000원 - 호이스트

819,000원)을 배상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2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사건(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감정인 G은 기계에 대한 감가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2015. 10. 5. 당시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을 합계 38,09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 선행 소송의 감정인은 이 법원에서 2015. 10. 5.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를 관리하여 운전하였고, 그 재조달원가에 현저한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기계의 2018. 5. 18. 기준 가액은 27,950,000원 $[130,000,000 \times 0.215(5/15) = 27,950,000]$ 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계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호이스트 크레인의 가액이 81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¹⁾. 선행 소송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에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해행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기계의 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재조달원가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가액배상액은 27,131,000원(= 2018. 5. 18. 기준 가액 27,950,000원 - 호이스트 크레인 가액 819,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7,1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가액과 관련하여 선행 소송에서 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 38,090,000원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의 가액 819,000원을 공제한 37,281,000원으로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을 반박하기 위하여 선행 소송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을 제8호증)를 인용하여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이 38,09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1심 제7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 38,090,000원 중 호이스트 크레인의 가액이 819,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된 부분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가액이다.